# 자동차 생산공장 작업자에서 발생한 말초성 T-세포림프종

성별	남성 나	55세	직종	자동차 생상 <del>공</del> 장 작업자	직업관련성	높음
----	------	-----	----	------------------------------	-------	----

### 1 개요

근로자 ○○○은 1985년 2월 15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대형조립부, 의장1공장, 주철주조부, 소재보전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조립업무, 탈사업무, 기계보전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2016년 10월 12일 대학병원에서 림프종을 진단받고 항암치료와 골수이식을 받았다. 근로자는 주철주조부, 소재보전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분진, 유독가스, 신나, 수지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2017년 6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17년 11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 2 작업환경

근로자는 1985년 2월 15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1991년 2월 28일까지(약 6년간) 대형생산부, 버스부, 대형생산관리부, 특장차부, 트럭부, 그레이스부, 1공장 의장 등에서 차체 메인조립 작업을 하였다. 초기 3년간 작업했던 버스부, 트럭부 등은 현재 다른공장으로 이전한 상태이며, 부서명만 바뀌었을 뿐 1공장 의장까지 모두 동일하게 임팩트로 볼트를 체결하는 방식의 조립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때 근로자는 주야 12시간 교대작업을 하였다. 근로자는 1991년 3월부터 1997년 2월까지(약 6년간) 주철1공장 주철주조부에서 탈사업무(픽업장이라고 함) 및 제품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다. 1997년 3월부터 현재까지(약 20년간) 기계보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3 해부학적 분류

- 림프조혈기계암

###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 5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16년 8월 말부터 오른쪽 목에 덩어리가 발생하였고 2016년 9월 28일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경부 CT 촬영하였다. 림프종 의심되는 소견 있어 2016년 10월 10일 우측 목 림프절 생검 시행하여 peripheral T cell lymphoma, NOS를 진단 받았고, 항암치료(R-CHOP) 받고 경과관찰 중에 있다. 약 15년 전 금연하였고 금연 전에는 0.5갑, 10년, 총 5갑년의 흡연력이 있었다. 음주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력 상 10여 년 전 허리디스크 수술 받았으며, 그 외 특이병력은 없었다.

##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55세가 되던 2016년에 분류되지 않은 말초성 T-세포림프종(비호지킨림프종)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사업장에 입사하여 6년간 차체메인 조립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후 6년간 주철주조부, 이후 21년간 소재보전부에서 기계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비호지킨림프종의 직업적 위험요인으로는 벤젠이 제한적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는 주철주조부와 소재보전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고, 특히 기계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했던 세척제를 통하여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과거 문헌을 통해 추정한 벤젠 노출량, 개인보호구의 부적절한 착용, 수시로 세척제로 손을 씻었다는 진술 등으로 볼 때 벤젠 노출량은 상당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끝.